

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 례 안

(5건)

거 창 군

--- 목 차 ---

의안번호	조 례 명	쪽수
2025-17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략담당관)	1
2025-18	거창군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행정과)	17
2025-19	사파테마파크 등의 휴무일 조정을 위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관광진흥과)	26
2025-20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	30
2025-21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축과)	51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5-17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정비한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경남별장을 운영하고 관광객과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 인구 유입 및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남별장을 정의함(안 제2조)

나. 빈집 활용의 용도에 경남별장을 추가함(안 제8조)

다. 경남별장 설치, 이용료 등을 신설함(안 제9조, 별표 1, 별표 2)

1) 설치·운영, 위탁

2) 이용료, 면제, 반환 기준, 이용제한

3) 프로그램 체험비 등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제117조·제156조·제161조

2)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2025년도 예산 100백만원 확보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1. 17.~2. 1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불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경남별장”이란 활용을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생활)으로 신고한 시설을 말한다.

제8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경남별장 등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숙박시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경남별장 설치 등) ① 군수는 관광객 등에게 숙박 제공을 위해 경남별장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필요시 경남별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경남별장 이용료 및 면제 기준은 별표 1,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군수는 규칙으로 정하는 공익목적이나 안전 등을 위해 경남별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경남별장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체험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이나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등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용지”란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녹지 공간 등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4. “활용”이란 빈집정비 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u><신 설></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이나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등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용지”란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녹지 공간 등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4. “활용”이란 빈집정비 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u>경남별장</u>”이란 활용을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생활)으로 신고한 시설을 말한다.
제8조(빈집의 활용) ① 군수는 정비를 끝낸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1.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귀농·귀촌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및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문화예술인 주거·창작공간,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공용지 등 주민복지 증진 또는 사회적가치 활성화를 위한 시설	제8조(빈집의 활용) ① 군수는 정비를 끝낸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1.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귀농·귀촌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및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문화예술인 주거·창작공간,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공용지 등 주민복지 증진 또는 사회적가치 활성화를 위한 시설

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신 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② 제1항에 따라 빈집을 활용하게 할 경우에 입주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 설>

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4. 경남별장 등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숙박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② 제1항에 따라 빈집을 활용하게 할 경우에 입주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경남별장 설치 등) ① 군수는 관광객 등에게 숙박 제공을 위해 경남별장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필요시 경남별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경남별장 이용료 및 면제 기준은 별표 1,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군수는 규칙으로 정하는 공익목적이나 안전 등을 위해 경남별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경남별장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체험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별표 1]

경남별장 이용료 및 면제 기준(제9조 관련)

1. 이용료

시설	1박	1주	기준인원	비고
1동~ 3동	15만원	50만원	4명	가. 기준인원 초과 시 초과 1명당 1만원 추가 나. 1박은 그날 15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 사용하는 것을 말함 다. 한 달 살기나 1년 살기 대상자는 관리(전기·수도·가스 등을 말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자부담 조건으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함

2. 이용료 면제 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가. 5세 이하 아동

나. 군이 주최·주관하는 교육·행사·축제에 초청받는 사람 등이 이용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경남별장 활성화를 위해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별표 2]

경남별장 이용료 반환 기준(제9조 관련)

기준	반환 내용
1. 이용 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전액반환
2. 이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이용 예정일 예정시간 이전 취소	20퍼센트 공제 후 반환
4. 이용 예정일 예정시간 이후 취소	반환 없음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	전액 반환
6. 군의 귀책사유로 인해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및 위약금

비고: 제6호의 위약금 기준 및 그 밖의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을 준용함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경남별장 운영 및 위탁

나. 관련 조문: 경남별장 설치 등(안 제9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연도 (2025년)	2차연도 (2026년)	3차연도 (2027년)	4차연도 (2028년)	5차연도 (2029년)
합계	100	100			
도비	50	50	-	-	-
군비	50	50	-	-	-

3. 경남별장 조성비

가. 2024년 예산 1,000백만원

나. 도비(지방소멸대응기금) 500백만원, 군비 500백만원

4. 비용추계 요약

가. 2025년 민간위탁금 100백만원

나. 위탁 운영에 따른 운영비

작성자 전략담당관 이남열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지역특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시·도유산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7.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57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 알려야 한다.

④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 「관광기본법」

제9조(지속가능한 관광 시책의 추진) 정부는 관광자원의 보호와 환경친화적 개발·이용,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 등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10호, 2024. 2. 6.,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营业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3.~7. (생략)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5. 28.]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타법개정]

제4조(숙박업의 세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2.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행 2023. 12. 2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26. 숙박업(1개 업종)

숙박업 (1 - 3)		
분	쟁	유
형	해	결
고	기	준
1) 성수기 주중		
①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o 계약금 환급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함.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o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여름시즌: 7.15~8.24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o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 겨울시즌: 12.20~2.20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o 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o 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 주말 : 금요일·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 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o 손해배상	

숙박업 (2-3)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2) 성수기 주말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o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o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o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o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o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o 손해배상					
3) 비수기 주중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o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o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4) 비수기 주말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o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o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숙박업 (3-3)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5)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o 계약금 환급	
- 이용이 불가한 경우	o 계약금 환급	
6) 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경우	o 계약금 환급	
7) 1급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 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상의 1급감염병을 의미함
- 숙박시설에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 체결 이후 숙박지역 또는 이용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동수단(항공기 등) 이용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 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계약내용 변경 시	o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계약내용 변경이란, 숙박예정일 연기 등 계약내용 변경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함
· 계약해제 시	o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계약내용 변경 시	o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계약해제 시	o 위약금 50% 감경	*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숙박요금(계약금 포함) 등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함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의견22-0241

하나의 조례 안에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자치사무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율하려는 경우에는, 제정하려는 내용에 부합하는 조례의 체계, 조례 제정 대상 제도들 간의 상호 유사성,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개별법인지 「지방자치법」

제28조의 일반규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법령 사이의 체계, 여러 법률이나 대상과 관련된 내용을 하나의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혼선의 정도와 입법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에 문화 진흥과 관련한 사항이 규정되어 규정 대상들 간에 상호 유사성이 높고, 해당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으로 법령 체계상 문제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입법경제성을 보더라도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에 문화자치에 관한 사항과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함께 규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의견20-0019

~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 취지를 존중하여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고, 규칙으로 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거나 수시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규칙 등 하위 자치법규로 다시 위임할 수 있을 것인바, 이 경우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 등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 후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운용) ① 시·도는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는 시·도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한 조합(이하 “기금관리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리·운용한다.

③ 기금관리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도에 대한 재정지원
 2.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군·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3.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정지원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거창군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5-18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의 기준,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및 지원 등을 정하여 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 교류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우호 증진 및 교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책무를 정함(안 제1조~4조)
- 나. 자매결연등 및 기준, 절차를 정함(안 제5조·제6조)
- 다. 교류협력 사업 및 지원, 문화·관광시설의 감면을 정함(안 제7조·제8조)
- 라. 해지를 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2025년도 예산 80백만원 확보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12. 27.~2025. 1. 15.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불입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이 국내외 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과 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내외 도시 간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교류협력 관계를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교류의사를 바탕으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신뢰를 쌓아 상호 협력 가능성을 도모하며 앞으로 자매결연을 지향하는 교류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외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각 분야에서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자매결연등 및 기준) 군수는 교류협력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거나 우호교류를 위한 협약(이하 “자매결연등”이라 한다)을 하여 교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
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협력을 통한 실익의 기대가능성
5. 역사적 배경이나 문화적 특성 등을 고려한 교류협력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등

제6조(자매결연등의 절차 등) ① 자매결연은 우호교류 과정을 통해 충분한 사전교류 후에 한다.

② 자매결연등은 군수와 국내외 도시 단체장이 공동의 관심 분야,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관한 협약서에 합의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자매결연등의 모든 절차와 협약서의 내용 및 상호방문에 따른 경비 부담 등은 호혜주의에 따라 군수와 국내외 도시 단체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교류협력 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국내외 도시와 교류협력 활성화 및 우호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교류협력
2.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한 교류협력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업간 교류협력
4. 지역 농특산물 및 자원의 교류를 통한 상호실익 증진
5. 군 우수정책의 홍보 및 공유
6. 그 밖에 군수가 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군이 추진하는 교류사업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실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문화·관광시설의 감면) 군수는 자매결연등을 한 도시의 주민이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문화·관광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군민에 준하는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

제9조(자매결연등의 해지) 군수는 자매결연등을 한 도시와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자매결연등이 유명무실한 경우 자매결연등을 해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자매결연등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거창군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및 지원
- 나. 관련 조문: 교류협력 사업 및 지원(안 제7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연도 (2025년)	2차연도 (2026년)	3차연도 (2027년)	4차연도 (2028년)	5차연도 (2029년)	합계
군비	80	80	80	80	80	400

3. 비용추계 상세내역

- 가. 국내 자매·우호 도시 교류행사 등: 36백만원
- 나. 국외 국제교류 행사: 33백만원
- 다. 국제교류도시 연수공무원 초청: 11백만원

작성자 행정과장 윤 광 식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 차.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지역특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시·도유산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교류협력의 범위) 법 제47조제1항제10호의 교류·협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친선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으로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 「거창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2025. 2.5.제정·시행)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거창군의회에서 의결할 사항과 거창군의회에 보고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의견이 충실히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자치행정을 실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결사항 등) ①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른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이용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3.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합의 및 양해각서 등(이하 “협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 ②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사과테마파크 등의 휴무일 조정을 위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5-19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거창군을 찾는 방문객이 거창군 곳곳을 둘러보고 머무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과테마파크 등 시설의 휴무일을 조정하여 주중 관광객의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하여 공공시설 휴무일 일괄 조정(안 제1조·제2조)

1) 조례 2건

가)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거창군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2) 휴무일 변경: 월요일 ⇒ 수요일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미래농업과, 농업소득과 합의 완료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1. 22.~2. 1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사과테마파크 등의 휴무일 조정을 위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월요일”을 “수요일”로 한다.

제2조(「거창군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거창군 거창천적
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월요일”을 “수요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과테마파크 등의 휴무일 조정을 위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사과테마파크·거창천적생태과학관 휴무일 변경

나. 관련 조문: 안 제1조·제2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천만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가. 2025년 예산 약 5백만원 미만 소요 예상

- 1) 시설별 안내판 등의 변경
- 2) 휴무일 변경 홍보 현수막 게첨 등

작성자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차. (생략)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 타. (생략)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더.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마.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나. (생략)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나.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5-20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의 시설 이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교육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수질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 전체를 포함하는 제명으로 변경함

1) 위임사무: 낙동강수계 지원사업 절차

2) 자치사무: 특별지원사업으로 설치된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나.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시설 이용료 등을 신설함(안 제8조·별표)

1) 이용료, 면제 및 반환 기준

2) 이용 제한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61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

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1. 17.~2. 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낙동강수계 지원사업 절차 및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조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군수”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한다.

제8조에 제4항·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환경교육센터의 시설 이용료, 이용료의 면제 및 반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⑤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시설 이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u> 제6조(사업계획수립) ① 지원대상지역 읍·면장은 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계획, 위원회 심의결과 및 주민회의결과,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u>군수</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u>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u>는 제1항에 따라 읍·면장이 제출한 사업에 대하여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해당 지원대상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8조(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환경교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지역농특산물 전시·판매 3. 환경교육센터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운영 4. 그 밖에 하천환경, 지역주민 복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u>거창군 낙동강수계 지원사업 절차 및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조례</u> 제6조(사업계획수립) ① 지원대상지역 읍·면장은 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계획, 위원회 심의결과 및 주민회의결과,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u>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u>군수</u>는 제1항에 따라 읍·면장이 제출한 사업에 대하여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해당 지원대상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환경교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지역농특산물 전시·판매 3. 환경교육센터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운영 4. 그 밖에 하천환경, 지역주민 복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u><신 설></u>	④ 환경교육센터의 시설 이용료, 이용료의 면제 및 반환 기준은 별표와 같다.
<u><신 설></u>	⑤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시설 이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별표]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시설 이용료, 면제 및 반환 기준(제8조제4항 관련)

1. 시설 이용료

시설	이용료		비고
	평일	토요일 · 공휴일	
교육장, 영상 교육장	40,000원	20 퍼센트 가산	1. 시설 이용 시간 가. 기본 2시간 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 2. 추가 요금 가. 1시간 초과 시 10,000원 나. 냉난방 등 전기 사용: 10,000원 3.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함
야외 공연장	50,000원		

2. 이용료 면제

면제 대상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 3.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단체 4. 그 밖에 하천환경, 주민복지 등을 위해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 이용료 반환

유형	반환 기준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
2. 거창군의 귀책사유로 취소한 경우 가.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나.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다. 이용예정일 그날 취소	가. 이용료 전액 반환 나. 이용료 전액 반환 및 총이용료의 10퍼센트 배상 다. 이용료 전액 반환 및 총이용료의 20퍼센트 배상
3.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한 경우 가.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이용 취소를 신청하여 사유가 인정된 경우 나.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이후에 이용 취소한 경우	가. 이용료 전액 반환 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한 금액

비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7호, 2025. 1. 7., 일부개정]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1. 수입

가.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입장료 등 이용료

나.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가 납부하는 사용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대(轉貸)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다. 그 밖에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입

2. 지출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④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드는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계산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계산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28호, 2024. 2. 6., 일부개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낙동강수계와 낙동강수계에서 취수(取水)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낙동강수계 밖의 모든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계바깥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계바깥지역에 대하여는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낙동강수계 지역의 구체적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1의2.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주변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3. 주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4.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5. 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와 유기영농(有機營農)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2. 수도시설을 비롯한 주민편익시설 설치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3. 교육기자재 공급 등 육영사업

4. 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금지나 제한으로 그 구역에서 어로행위(漁撈行爲), 선박을 이용한 영업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이주(移住)나 전업(轉業)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간접 지원사업

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財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와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219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24조(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법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중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비 규모

2.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수립지침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4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3의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

2.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계획 중 사업규모, 주민지원사업비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매 연도의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3. 9.>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제23조제1항 관련)

1. 간접지원사업

가. 소득증대사업

- 1) 농림축수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사업
- 2)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사업
- 3) 친환경농축산물의 생산·유통 지원사업
- 4) 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복지증진사업

- 1) 주민의 편익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사업

- 2) 의료, 보육 등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사업
 - 3) 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다. 육영사업

- 1) 교육기자재의 공급 및 학교급식시설의 지원 등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사업
- 2) 학자금·장학금의 지원 및 장학기금의 적립·운영 등 육영 관련 사업
- 3) 그 밖에 위원회가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오염물질 정화사업

- 1) 분류식 하수관로 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등 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사업
 - 2)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른 지역보다 오염물질의 정화비용이 추가로 드는 경우의 정화비용 지원사업
 - 3) 그 밖에 위원회가 오염물질의 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직접지원사업: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의 편의도모를 위한 사업 등 가구별 생활지원사업
3. 특별지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자치구 지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사업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6. 7. 7.>

낙동강수계 지역의 범위(제2조 관련)

1. 낙동강수계 지역은 분수계(分水界)를 기준으로 강우 시 빗물이 최종적으로 낙동강 또는 낙동강에 유입되는 지류로 흘러드는 지역을 말한다.
2. 낙동강수계 지역의 범위를 행정구역 단위로 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다만, 다음 표의 행정구역 중 낙동강수계 내의 지역과 낙동강수계 외의 지역이 모두 있는 행정구역의 경우에는 낙동강수계 내의 지역만 적용한다.

구 분	범 위
부산광역시	강서구 죽림동·식만동·죽동동·봉림동·강동동·대저1동·대저2동·명지동·생곡동·구랑동·범방동·지사동·미음동
	금정구 금성동
	북구 구포동·금곡동·만덕동·덕천동·화명동
	사상구 감전동·괘법동·엄궁동·모라동·덕포동·삼락동·주례동·학장동
대구광역시	전 지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이천리·소호리만 해당한다)
강 원 도	태백시 금천동·동점동·문곡동·소도동·장성동·철암동·화전동·황지동·통동·백산동·혈동
경상북도	안동시, 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군위군, 성주군, 고령군, 예천군, 의성군, 청도군, 칠곡군
	봉화군(춘양면 중 우구치리는 제외한다),
	청송군(부동면 중 내룡리·라리·항리는 제외한다)
	경주시 산내면(내일리·대현리·신원리·외칠리·내칠리·우라리·감산리·의곡리·일부리만 해당한다), 서면(아화리만 해당한다)
	문경시(동로면 명전리, 가은읍 완장리의 일부는 제외한다)
	포항시 죽장면(가사리·감곡리·두마리·매현리·방흥리·봉계리·석계리·월평리·일광리·입암리·정자리·지동리·침곡리·합덕리·현내리만 해당한다)
	영주시(부석면 남대리·단산면 마락리는 제외한다)

	영천시 고경면(가수리·고도리·논실리·단포리·대성리·대의리·덕암리·덕정리·도암리·동도리·부리·삼거리·삼산리·삼포리·상덕리·상리리·석계리·오류리·용전리·전사리·차당리·창상리·창하리·청정리·초일리·칠전리·파계리·학리·해전리만 해당한다)·조교동·망정동·야사동·언하동·신기동·문내동·문외동·창구동·과전동·오미동·녹전동·도림동·매산동·교촌동·성내동·화룡동·오수동·쌍계동·대전동·서산동·도동·금노동·범어동·작산동·봉동·도남동·본촌동·채신동·괴연동·완산동·금호읍·대창면·북안면·신령면·임고면·자양면·청통면·화남면·화북면·화산면 상주시 냉림동·낙상동·중덕동·화산동·계산동·신봉동·가장동·양촌동·지천동·오대동·홍각동·성하동·성동동·거동동·인평동·서곡동·모서면(대포리만 해당한다)·낙양동·개운동·연원동·남장동·내서면·인봉동·북룡동·서성동·서문동·화개동·외담동·현신동·병성동·도남동·무양동·조산동·부원동·죽전동·만산동·남적동·공검면·낙동면·사벌면·외남면·외서면·은척면·이안면·중동면·청리면·함창읍·화동면(어산리만 해당한다)·공성면(거창리·금계리·도곡리·무곡리·봉산리·산현리·영오리·오광리·옥산리·용신리·용안리·이화리·인창리·장동리·조오리·평천리만 해당한다)·화북면(용유리·장암리·상오리만 해당한다)·화서면(상곡리·하송리만 해당한다)·화남면(동관리만 해당한다) 영양군 석보면·영양읍·일월면·입암면·청기면·수비면(신암리·계리·송하리·죽파리만 해당한다). 울진군 서면(광회리·전곡리만 해당한다)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거창군 ,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창원시 동읍·대산면·북면
	마산시 내서읍
	사천시 곤명면(금성리·마곡리·본촌리·삼정리·성방리·송림리·신흥리·연평리·은사리·작팔리·정곡리·봉계리만 해당한다)·곤양면(홍사리만 해당한다)
	양산시 교동·유산동·어곡동·다방동·남부동·중부동·북부동·명곡동·상북면·물금읍·신기동·북정동·산막동·호계동·동면(사송리·내송리·석산리·금산리·가산리만 해당한다)·원동면·하북면
	진주시 가좌동·호탄동·강남동·망정동·주약동·칠암동·본성동·남성동·인사동·동성동·대안동·평안동·수정동·장대동·중안동·계동·봉곡동·봉래동·수정동·상대동·상봉동·하대동·상평동·신안동·옥봉동·이현동·유곡동·초전동·장재동·하촌동·판문동·평거동·귀곡동·금곡면·금산면·명석면·문산읍·미천면·내동면·대곡면·대평면·사봉면·수곡면·이반성면·일반성면·지수면·진성면·집현면
	고성군 개천면·영오면·영현면·대가면(갈천리·송계리·신전리만 해당한다)
	하동군 옥종면
전라북도	남원시(아영면·인월면·운봉읍·산내면만 해당한다)
전라남도	구례군(산동면 좌사리만 해당한다)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의견22-0241

하나의 조례 안에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자치사무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율하려는 경우에는, 제정하려는 내용에 부합하는 조례의 체계, 조례 제정 대상 제도들 간의 상호 유사성,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개별법인지 「지방자치법」 제28조의 일반규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법령 사이의 체계, 여러 법률이나 대상과 관련된 내용을 하나의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혼선의 정도와 입법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에 문화 진흥과 관련한 사항이 규정되어 규정 대상들 간에 상호 유사성이 높고, 해당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으로 법령 체계상 문제도 없

는 것으로 보이며, 입법경제성을 보더라도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에 문화자치에 관한 사항과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함께 규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의견20-0019

~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 취지를 존중하여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고, 규칙으로 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거나 수시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규칙 등 하위 자치법규로 다시 위임할 수 있을 것인바, 이 경우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 등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 후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76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88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8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애등급 1급·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77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고궁 등 이용증(이하 이 조에서 “이용증”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③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용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부장관은 발급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④ 이용증의 신청방법, 발급기관, 발급절차 및 서식 등 이용증의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79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상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6.] [법률 제20008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대상, 시설의 종류 및 감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 9. 22.>

②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80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23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81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54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54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해야 한다.

1.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
2.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그 배우자
3. 보훈보상대상자와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4. 보훈보상대상자와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 중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9의2와 같다.
 -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86조제1항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106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사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사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사상자. 다만, 의사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사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때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사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활동 보조자의 경우에는 의사상의 의사자증 제시로 이를 갈음한다.
 -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82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0조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참전유공자가 제1항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을 내보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주차시설 등 참전유공자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83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74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본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행 2023. 12. 2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26. 숙박업(1개 업종)

숙박업 (1 - 3)		
분	쟁	유
형	해	결
고	기	준
1) 성수기 주중		
①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o 계약금 환급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함.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o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여름시즌: 7.15~8.24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o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 겨울시즌: 12.20~2.20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o 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o 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 주말 : 금요일·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 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o 손해배상	

숙박업 (2-3)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2) 성수기 주말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o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o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o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o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o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o 손해배상					
3) 비수기 주중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o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o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4) 비수기 주말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o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o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숙박업 (3-3)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5)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 -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 이용이 불가한 경우	o 계약금 환급 o 계약금 환급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6) 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경우	o 계약금 환급	
7) 1급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 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 숙박시설에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 체결 이후 숙박지역 또는 이용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동수단(항공기 등) 이용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 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계약내용 변경 시 · 계약해제 시 -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계약내용 변경 시 · 계약해제 시	o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o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o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o 위약금 50% 감경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상의 1급감염병을 의미함 * 계약내용 변경이란, 숙박예정일 연기 등 계약내용 변경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함 *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숙박요금(계약금 포함) 등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함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의견20-0019

~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 취지를 존중하여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고, 규칙으로 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거나 수시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규칙 등 하위 자치법규로 다시 위임할 수 있을 것인바, 이 경우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 등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 후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법령의 ‘제명(題名)’이란 법령의 고유한 이름으로서 그 규율내용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지어야 하고, 제명 작성시 ‘간결성’을 고려하여야 하나, 주된 내용이 둘 정도인 경우에는 주된 내용을 모두 열거하여 제명이 해당 법령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제명) 제명의 간결성과 내용의 대표성 문제는 종종 모순되는 경우가 있다. 제명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흔히 ‘등’자를 제목의 주된 내용의 표시 다음에 붙이는 경우가 많으나 주된 내용이 둘 정도인 때에는 주된 내용을 모두 열거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다.

□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보훈 기본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78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5-21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건축법 시행령」에서 가설건축물별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로 위임되어 정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중에서 농막을 삭제함
(안 제26조제2항)

- 1) 이유: 농막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임시창고로 규정됨
- 2) 근거: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나. 가설건축물별 존치기간의 연장 횟수를 신설함(안 제26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건축법」 제20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 2)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1. 21.~2. 1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15조제7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별 준치기간의 연장 횟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영 제15조제5항제6호·제7호·제8호·제14호를 제외한 가설건축물: 횟수 제한 없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횟수 제한 없음

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제1호의2에 따른 농막 및 농촌 체류형 쉼터

나. 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맞을 것 2.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및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일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공장이 있는 부지 안에서 지면(바닥)에 레일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것 2. 천막구조로 된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3. 공장이 있는 부지 안에서 기계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4. 공장부지안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6. 「<u>농지법 시행규칙</u>」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	제26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맞을 것 2.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및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일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공장이 있는 부지 안에서 지면(바닥)에 레일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것 2. 천막구조로 된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3. 공장이 있는 부지 안에서 기계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4. 공장부지안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삭 제>

<u><신 설></u>	③ 영 제15조제7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별 존치기간의 연장 횟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영 제15조제5항제6호·제7호·제8호·제14호를 제외한 가설건축물: 횟수 제한 없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횟수 제한 없음 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제1호의2에 따른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 나. 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	--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홍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1. 17., 2017. 4. 18.>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도시·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홍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홍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⑥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제5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1조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않는다.

가.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1층 또는 2층인 가설건축물(제5항제2호 및 제14호의 경우에는 1층인 가설건축물만 해당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2)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제5항제2호 및 제14호의 경우에는 2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다만,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법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 제5항제4호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5조, 제50조의2, 제53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제61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제5항 각 호의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⑧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

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⑨ 제8항 본문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주어야 한다.

⑩ 삭제 <2010. 2. 18.>

□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2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3호, 2025. 1. 24., 일부개정]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시창고(「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임시창고 또는 같은 항 제16호에 따라 임시창고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

나.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호의2에서 같다)이 2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과 건축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7)에 따른 건축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호의2에서 같다)이 모두 2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주차공간(해당 가설건축물의 부속용도로서 해당 가설건축물과 별도로 설치하는 주차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호의2에서 같다) 및 데크(해당 가설건축물에 연접하여 목조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바닥에 설치하는 별도의 구조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호의2에서 같다)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이하로 설치할 것

라.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했을 것

마. 법 제49조의2제2호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바.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농막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1의2. 농촌체험형 쉼터: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그 세대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농업인등”이라 한다)이 농작업(農作業)을 위한 임시숙소(「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임시숙소 또는 같

은 항 제16호에 따라 임시숙소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다음의 지역·지구 외의 농지에 설치되었을 것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
-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붕괴위험지역
- 3)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나.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1)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과 건축면적이 모두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 2) 농업인등이 한 필지의 농지에 제1호에 따른 농막과 함께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합산한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농막 또는 농촌체류형 쉼터에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과 그 건축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모두 33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주차공간 및 데크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이하로 설치할 것

라.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였을 것.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본문에 따라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연장 횟수를 정할 때에는 가설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고려하여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마.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를 통한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이도(里道), 농도(農道) 및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농지에 설치될 것

바.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의 면적은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한 필지의 농지에 둘 이상의 농촌체류형 쉼터 또는 농막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에 다목에 따른 시설의 면적(해당 시설이 있는 경우만 포함하되, 가설건축물 외곽에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화조의 면적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일 것

사. 법 제49조의2제2호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주택용소방시설

이 설치되었을 것

자.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2.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